

# 심사보고서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92
----------	-----

2020. 9. 16.(수)  
교 육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20년 8월 25일

다. 회부일자: 2020년 8월 28일

라. 상정일자: 2020년 9월 9일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교육국장 박창호)

### 가. 제안이유

○ 위기 학생, 학업 중단학생에 대한 대책으로 치유형 공립 대안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충북의 인재로 성장시키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학교 현황 및 설립규모

학교명 (가칭)	설립 규모		시설 규모		위 치	개교 예정	비 고
	학급	학생	부지(m <sup>2</sup> )	건물(m <sup>2</sup> )			
은여울고	3	45	9,772	4,612	충북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5	2021. 3.	

- 학교형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근거한 치유형 공립대안학교
- 학교운영형태: 기숙형 중고 통합학교
- 교육대상: 도내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고등학생
- 교육과정 운영방향
  - 자기이해와 감정표현을 통해 성찰과 치유가 일어나는 교육과정
  - 자기주도적 배움을 통해 스스로의 진로를 모색하는 교육과정
  - 손-가슴-머리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한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
  - 지역과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교육과정
  - 자발적 참여와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과정
  -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 ○ 예산 소요액 및 조달방안

(단위 : 천원)

학교명 (가칭)	시설 규모		재 정 사 업			조달 방안	비고
	부지(m <sup>2</sup> )	건물(m <sup>2</sup> )	부 지 매입비	시설비	계		
은여울고	9,772	4,612	374,601	3,311,816	3,686,417	자체 예산	

- 학교설립 예정 위치도: 의안 참조

### ○ 추진현황

- 2020. 3. 가칭) 은여울고 TF 및 개교준비팀 운영
- 2020. 5. 설립계획 수립
- 2020. 6. 도의회 설명회 (장소:은여울중)
- 2020. 8. 교육환경평가 심의
- 2020. 8.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 ○ 향후 추진계획

- 2020. 9. 학교설립계획안 의회 심의, 학교홍보
- 2020. 10. 신입생 모집
- 2021. 2. 독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 2021. 3. 개교
- 2022. 7. 국제교육원 중부분원 이전 및 리모델링
- 2023. 3. 이전

## 3. 검토보고 요지

### (수석전문위원 홍만표)

-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위기 학생과 학업 중단학생에 대한 대책으로 현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중부분원 위치에 자체예산 36억 8,641만 7천원<sup>4)</sup>을 투입하여 2021년 3월에 개교 예정인 3학급 45명 규모의 치유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은여울중학교와 함께 기숙형 중고 통합학교로 운영하려는 것임.

4)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계획안 2쪽에서 부지매입비 374,601천원, 시설비 3,311,816천원으로 구분하였음.

- 먼저 설립 목적과 필요성을 검토하면, 위기 학생과 학업 중단 학생을 충북의 인재로 성장시킨다는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은여울중학교을 졸업한 학생이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공립 대안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사료됨.

〈 은여울중학교 졸업 학생의 학업중단 상황 〉

구 분	진학 상황		학업 중단 상황		비고
	졸업인원	진학인원	중단 학생수	중단 비율	
2018년 2월 졸업	13명	13명	6명	46.2%	
2019년 2월 졸업	13명	13명	5명	38.5%	

- 현재 은여울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한 해 13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총 3학년 45명의 규모로 설립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건물 연면적이 4,612㎡는 현재 같은 규모의 대안학교인 은여울중학교의 건물 연면적이 5,088.18㎡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부지 매입비와 시설비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검토의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제출된 설립계획안에 따르면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중부분원의 이전 및 리모델링은 2022년 7월에 실시할 예정인데 반해, 2020년 10월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여 2021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중부분원의 이전 및 리모델링 완료까지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

#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

## 1. 제안이유

- 위기 학생, 학업 중단학생에 대한 대책으로 치유형 공립 대안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충북의 인재로 성장시키고자함
- 위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학교 현황 및 설립규모

학교명 (가칭)	설립 규모		시설 규모		위 치	개교 예정	비 고
	학급	학생	부지(m <sup>2</sup> )	건물(m <sup>2</sup> )			
은여울 고	3	45	9,772	4,612	충북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5	2021.3	

나. 학교형태: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 3에 근거한 치유형 공립대안학교

다. 학교운영형태: 기숙형 중고 통합학교

### 라. 설립개요

- 교육대상: 도내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고등학생
- 교육과정 운영 방향
  - 자기이해와 감정표현을 통해 성찰과 치유가 일어나는 교육과정
  - 자기주도적 배움을 통해 스스로의 진로를 모색하는 교육과정
  - 손-가슴-머리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한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
  - 지역과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교육과정
  - 자발적 참여와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과정
  -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다. 예산 소요액 및 조달방안

(단위 : 천원)

학교명 (가칭)	시설 규모		재 정 사 업			조달방안
	부지(m <sup>2</sup> )	건물(m <sup>2</sup> )	부 지 매입비	시설비	계	
은여울고	9,772	4,612	374,601	3,311,816	3,686,417	자체예산

바. 학교설립 예정지 위치도



3. 추진현황

- 2020. 3. 가칭) 은여울고 TF 및 개교준비팀 운영
- 2020. 5. 설립계획 수립
- 2020. 6. 도의회 설명회 (장소:은여울중)
- 2020. 8. 교육환경평가 심의
- 2020. 8.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 4. 향후 추진계획

- 2020. 9. 학교설립계획안 의회 심의, 학교홍보
- 2020. 10. 신입생 모집
- 2021. 2. 독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 2021. 3. 개교
- 2022. 7. 국제교육원 중부분원 이전 및 리모델링
- 2023. 3. 이전

#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계획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학업중단학생 발생 및 대안학교설립 요구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 물가상승률 배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합 계
계	13,975	1,347,896	2,324,546	3,686,417
자체예산	13,975	1,347,896	2,324,546	3,686,417

4. 부대의견 :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 문성효
연 락 처	043) 290 - 2258 E-mail : tolermoon@korea.kr

# 관 계 법 령

## □ 가. 초·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교원의 자격) 제1항,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항·제3항, 제24조(수업 등),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26조((학년제),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동의 제한), 제30조의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2017. 1. 10.)

제7조(학기운영 및 학년제) ① 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②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① 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 본문에 따른다. <개정 2009.11.5.>

② 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교육과정)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 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2016.10.28.)

제2조(정의)

1.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립대안학교"란 충청북도교육감이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5조(대안교육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안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보급
2. 소질·적성 개발 및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숙형 프로그램 운영
4. 대안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및 지원
5. 그 밖에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